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---

1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-489호, '19.10.24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관련입니다.
2.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,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자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37호, '20.5.12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각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 고시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,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부서 등에 이 고시 내용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' 및 '고시전문') 및 식품안전나라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) > 식품·안전 > 기타정보>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고시 제2020-37호) 1부  
2.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(고시 제2020-37호)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·단체 등

주무관 **안현주** 연구관 **문재은** 식품표시광고 전결 2020. 5. 12.  
정책팀 T/F팀장 **최종동**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표시인증과-7145 (2020. 5. 1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안전표시인증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189 팩스번호 043-719-2180 / charishj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구·경북! 힘내라 대한민국!